

위임전결규정

제정 2019. 09. 21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한국부식방식학회 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 회장의 결재 권한의 일부를 하위직에 위임하여 전결케 함으로써 각 전결권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임 전결 사항은 별도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 3 조 (권한과 책임)

전결권자는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 동시에 그 권한을 행사 또는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.

제 4 조 (예외사항)

- ① 회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위임 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상위 결재권자의 협조 및 회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제 5 조 (전결사항)

- ① 학회 관련 일반적인 전반의 내용은 총무이사 전결로 처리한다.
다만, 필요시에는 유관 업무의 담당 위원장의 협조 결재를 받아야 하며, 각 위원회 및 국제학술대회 업무 범위에 한해서는 해당 위원장 및 사무총장의 전결로 처리하고 주요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위임전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과 같으며, 붙임의 전결업무로 분류되지 않는 경미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원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그중 주요사항은 총무이사에 보고한다.

제 6 조 (결위 또는 부재 시의 결재)

- ① 전결권자가 결위 또는 부재 시에 그 전결사항은 총무이사 또는 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- ② 단, 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를 요하는 내용에 있어 상위 결재권자가 부재 시 하위 결재권자가 대결한 후 상위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재위임)

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중 경미한 내용은 차하위자에게 재위임 처리케 할 수 있다. 다만 그 내용이 특수한 사항은 제4조 2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지휘감독)

회장은 본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다.

부칙

1. (제정) 본 규정은 2019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[붙임]

위임전결 사항

No.	전결업무		전결권자(○) 검토(△) 협조(□)추후보고(◎)				
			회장 ¹⁾	수석부회장	재무이사	총무이사	위원장
1	법인	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과 변경	○	△		△	
2		사업 예/결산에 관한 사항	○	△	△		
3		사업실적/계획, 예/결산 등 주무부처 주요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	○	△	△	△	
4		임원 등기 변경	○	△		△	
5		주무부처 등 주요 기관 수신 공문서				○	
6		주무부처 등 주요 기관 발신 공문서				○	
7		규정 및 주요 지침 제/개정	○	△		△	
8		사업 수행에 따른 계약 (업무 관련성에 따라 검토자 달라짐)	○	△		△	△
9		국내외 학술교류 협약 및 시행	○	△		△	△
10		경미한 일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				○	
11	인사	직제 및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	○	△		△	
12		사무원의 연봉계약, 퇴직금, 복리후생, 특근에 관한 사항	○	△		△	
13		사무원의 출장에 관한 사항				○	
14		사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				○	
15	재무	모든 수입에 관한 사항				○	
16		모든 지출에 관한 사항 중 건당 100만원 이상의 기안	○	△	◎	△	
17		모든 지출에 관한 사항 중 건당 100만원 이하의 기안				○	
18	위원회 ³⁾	각 위원회 관할 업무에 관한 사항					○
19	외부과제	외부 과제 수행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					○(책임자)

¹⁾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된 전결권자 전결이후 최종결재권자인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함

²⁾지출건의 금액이 상한액 이상일 경우,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고 재무이사과 감사에 보고 후 집행하여야함

³⁾위원회는 대외교류위원회, 기술위원회, 편집위원회, 교육자격위원회, 표준위원회, 사업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